

기본자본,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

구 분	범 위
기본자본	- 자본금 - 자본잉여금 - 이익잉여금
보완자본	- 기타포괄손익누계액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의 100분의 45 상당액(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함) -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“정상” 및 “요주의”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
공제항목	- 영업권 상당액, 이연법인세자산, 기타포괄손익누계액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손실(기본자본에서 공제)

비고 : 공사가 신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후순위주택저당증권 및 후순위 학자금대출증권을 직접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당해 보유분의 평가로 인한 이익잉여금의 증가분에서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기본자본 중 이익잉여금에서 제외